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3.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1년 8월 19일
- 나. 발 의 자: 김길자 의원 외 5명
- 다. 회부일자: 2021년 8월 27일
- 라. 상정일자: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1. 8. 3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길자 의원)

- 가. 제안이유
 -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안 제5조)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 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안 제7조)
- 수탁기관에 관한 지도·감독(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원배)

- 본 안건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하고,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이고 9개의 본칙 조문과 2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음.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장애인 가족의 지원을 위한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장애인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
 - 장애인을 부양하고 보호하는 장애인 가족의 구성원은 장애인과 같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이 미흡한 바,
 - 본 조례안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

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규정되었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김길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377 호
----------	---------

발의년월일: 2021년 8월 일

발 의 자: 김길자 의원 외 5명

1. 제안이유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 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4조 ~ 제5조)

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마. 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안 제7조)

바. 수탁기관에 관한 지도·감독(안 제8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민법」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1. 8. 10. ~ 8. 17.):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 현황, 욕구 등 실태조사

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3.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의 사례 관리

5.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센터의 운영상황 및 추진업무를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운영 중인 센터는 제6조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